

# 양계 안데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 계란, 위생처리 품목에 포함

대란(54g ~ 60g)과 특란(60g 이상)의 가격차가 무려 22원을 웃돌고 특란과 경란의 차이는 40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불투명한 채란업계의 전망에 대하여 큰 우려의 소리가 나고 있다.

연초부터 신계입식이 경쟁적으로 일어나 최근 신계에 의한 초산란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석 이후 난가의 곤두박질과 장기적인 채란업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중추사육농장이 많아져 최근 중추시장의 판촉전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노계값이 좋아도 노계도태를 미루는 농장의 수가 만만치 않다.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단지·계우회별로 의견을 교환, 다가오는 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입개방화 시대의 국내 축산정책 방향의 정립을 위한 축산장기발전대책 세미나에 양계의 경우 내수물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전업과 기업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산지별 양계조합을 육성하고 과감한 자금지원과 세제 등 정책지원으로 육계의 계열화생산체계를 정착시키고, 계란집하장과 대도시공판장 설립으로 계

란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펴 나갈 예정이다.

채란업이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선결과제 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형 수퍼마켓을 중심으로 유통상인들이, 포장란(위생란)을 공급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한냉통상, 동부축산, 금수축산, 양계조합 등에서 유통시키는 계란이 전체물량의 5%를 상회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유통난좌 문제는 GP 처리란 공급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이웃 일본의 GP 처리시설 보급시 전액 보조에 의해 일시에 시작함으로써 유통개선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된 공산품 생산같이 표준화·규격화가 어려운 계란이지만 특정지역, 특정생산자의 생산품을 등록해 상표를 보호받을 수도 있다. 상표에 의한 계란신용거래 정착이 가깝게 느껴진다.

축협 또는 계우회, 단지, 협동농장 등이 앞장 서 신용거래(상표화)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정부는 계란, 닭고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위생처리 대상품목에 들지 않은 계란을 삽입해 위생적으로 등급화된 계란을 점진적으로 확대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소비증대를 유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위생적으로 등급화되지 않은 계란의 시중 유통이 어려운 시기가 점차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채란업 경기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유통개선을 통한 채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채란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 축산물도 소비자 피해보상 적용대상

경제규모가 비대해지고 국민 소비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는 최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고쳐 적용대상품목을 종전 40종 194품목에서 83종 48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음료, 통조림, 가공식품 등에 주로 적용해 오던 대상품목을 서비스업 종과 농축수산물 7개 종류의 51개 품목을 신설, 확대해 보상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데 있다.

과일·야채류, 수산물, 곡류, 육류, 알류, 사료, 종묘 등이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소비과정에서 함량 또는 용량 부족, 부폐,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작용 또는 용기파손 등에 의한 상해가 있는 경우 교환, 구입가 환불조치 뿐만 아니라 치료비와 경비 및 임금배상 까지도 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사료를 예를 든다면 가축이 사료의 부폐, 변질, 성분이상, 부작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의 교환 구입가 환불, 치료경비 배상이 가능하고 폐사시에는 동물가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료로 인한 가축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먹다 남은 사료를 책임있는 수의사 확인서를 받아 개봉된 사료가 변질되기 전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과거와

달리 업자와 소비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료 뿐만 아니라 계란, 메추리알, 닭고기, 돼지고기 등도 규정의 적용대상품목에 들어가 앞으로 축산물 유통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신설된 농수축산물(7개 품종)의 품목별 보상기준은 표와 같다.

### \*농수축산물 품목별 보상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 난류, 육류, 곡류, 과일·야채류 • 수산물류 1) 함량, 용량 등부족 2) 부폐,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 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사료 1) 부폐, 변질 2) 성분이상 3) 유효기간 경과 4) 부작용 5) 동물폐사 • 종묘 등 1) 파종 전 불량확인 ① 용량미달 ② 이물혼입 ③ 포장재 파손 ④ 유효기간 경과 ⑤ 부폐, 변질 2) 파종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혼입 ① 재파종가능시 ② 재파종 불가능시 -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타품목으로도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 (재배기간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하자일 경우 -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동물치료비 및 경비배상 동물가격 배상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동물치료비 및 경비배상 동물가격 배상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제품교환 및 직접경비배상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예상수익액 배상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